

초과근무 명령서

제 호

2017.03.13

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를 승인하고자 합니다.

부서명 : 현장대응단

직 급	성 명	근무일시 (시스템기록시간)	업무추진내용 (구체적으로 작성)	구분
지방소방령	김시욱	2017년 3월 13일 07:00부터21:00까지	빛물펌프장 합동 소방훈련 사항 점검 등	사전
지방소방장	노재운	2017년 3월 13일 07:00부터21:00까지	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필 요현황 파악 등	사전